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지 제4호서식]

[ ]해직공무원 [ ]심의·결정기간
[ ]징계공무원 [ ]재심의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

신청인	성명(한자)	( )	생년월일	
	주소			
	전화번호		해직공무원과의 관계	
심의(재심의)·결정기간	당초	년 월 일까지	연장	년 월 일까지
연장 사유				
그 밖의 안내사항				

「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 단서, 제8조제2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직공무원(징계공무원) 심의·결정기간(재심의 결정기간)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청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